오스트리아 체류·정착 관련 안내

2019년 2월 주오스트리아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

목차

I. 오스트리아 입국
Ⅱ. 오스트리아 체류증(Aufenthaltstitel)
1. 비자 및 체류증 관할기관 3
2. 체류증의 종류 3
3. 체류증의 유효기간5
4. 체류증의 발급조건5
5. 체류증 신청 시 공통 구비서류6
6. 체류증 발급요금6
III. 오스트리아 체류증(Aufenthaltstitel) 별 신청방법6
1. 체류허가(Aufenthaltsbewilligung)6
2. 정착허가(Niederlassungsbewilligung)9
3. 노동불가 정착허가
(Niederlassungsbewilligung-ausgenommen Erwerbstätigkeit)9
4. 노동불가 친인척 정착허가
(Niederlassungsbewilligung-Angehöriger)10
5. 국민 가족(Familienangehöriger)11
6. 레드-화이트-레드 카드(Rot-Weiß-Rot Karte)11
7. 레드-화이트-레드 카드 플러스(Rot-Weiß-Rot Karte plus)18
8. 블루카드 EU(Blaue Karte EU):
특별 고급인력, 유기한 정착, 제한적 노동19
9. 영주권 EU(Daueraufenthalt-EU):
무기한 정착, 오스트리아 전역 노동가능 20
Ⅳ. 설명회 질문과 답변 (2016.11.22.)20

I. 오스트리아 입국

한국 국적자를 포함한 (EU 국가 출신이 아닌) 제3국민¹⁾은 아래에 해당하는 체류에 허가를 받아야 함

1. 6개월 이하 체류 시

- 비자(Visum)²⁾필요
 - 근거법: 『외국인경찰법(Fremdenpolizeigesetz)』 우리 국민은 양자 무사증(=무비자) 협약에 의해 90일까지 비자 없이 입국가능하나 90일을 초과하여 60일 이하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할 시 필요

2. 6개월 이상 체류 시

- 체류허가(Aufenthaltsbewilligung) 또는 정착허가(Niederlassungsbewilligung) 필요
 - 근거법: 『정착 및 체류에 관한 법(Niederlassungs- und Aufenthaltsgesetz)』 6개월 이상 체류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·거부·박탈에 관한 법

※난민 -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적용- 근거법: 『난민법(Asylgesetz)』

II. 오스트리아 체류증

1. 비자 및 체류증 관할 기관

가. 신청·심사·발급기관:

오스트리아 내: 주지사 또는 주지사가 위임한 지역구행정관청

오스트리아 외: 재외공관

- 나. 상소기관: 주행정법원(Landesverwaltungsbehörde)
- 다. 처벌기관: 구행정관청(Bezirksverwaltungsbehörde)
 - ※ 심급(Instanzenzug)

1심: 주지사 또는 지역구행정관청

2심: 주행정법원

2. 체류증(Aufenthaltstitel) 종류

가. 체류허가(Aufenthaltsbewilligung): 유기한 임시체류, 정착 불가

¹⁾ 제3국민(Drittsstattangehörige)이란, EU 국민 및 스위스 국민을 제외한 모든 (대한민국 국민 포함) 외국인

²⁾ 비자(Visum): 6개월 이하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는 제3국민에게 발급하고 있으며, 재외공관에서만 발급 가능한 스티커 형식 사증임

- 1) 다국적기업 내 전근자 (Unternehmensintern transferierter Arbeitnehmer, ICT) (제3국(대한민국) > 오스트리아 이동)
- 2) 다국적기업 내 전근자 (mobile ICT)
- 3) 다국적기업 파견자(Betriebsentsandter)
- 4) 자영업자(Selbständiger)
- 5) 예외적 고용직 근로자(Sonderfälle unselbständiger Erwerbstätigkeit): 종교인, 언론인, AuPair 등
- 6) 초중고생(Schüler)
- 7) 대학생(Studenten)
- 8) 연구원(Forscher-Mobilität)
- 9) 비영리조직 근무자(Sozialdienstleistende): 연장불가
- 10) 자원봉사자(Freiwillige)
- 11) 동반가족(Familienangehörige): 다국적기업전근자, 예술가, 예외적 고용직 근로자, 대학생, 연구원의 동반가족
- 나. 정착허가(Niederlassungsbewilligung)
 - 유기한 정착, 자영업
- 다. 노동불가 정착허가(Niederlassungsbewilligung ausgenommen Erwerbstätigkeit)
 - 사적 체류목적, 노동불가 유기한 정착
- 라. 노동불가 친인척 정착허가(Niederlassungsbewilligung Angehöriger)
 - 노동불가 유기한 정착
- 마. 오스트리아 국민 가족(Familienangehöriger)
 - 오스트리아 국민의 가족, 유기한 정착, 오스트리아 전역 노동가능
- 바. 레드-화이트-레드 카드(Rot-Weiß-Rot-Karte)
 - 고급 전문인력, 유기한 정착, 제한적 노동가능
 - 1) 고급전문인력 (Besonders Hochqualifizierte)
 - 2) 인력부족 전문직(Fachkräfte in Mangelberufen)
 - 3) 기타 고용전문인력(Sonstige unselbstständige Schlüsselkräfte)
 - 4) 오스트리아 소재 대학 졸업자(Studienabsolventen)
 - 5) 기타 자영전문인력(Selbstständige Schlüsselkräfte)
 - 6) 스타트업(Start-up) 설립자
 - 7) 타국 EU 영주권 소지자(Personen mit einem Aufenthaltstitel "Daueraufenthalt EU" eines anderen EU-Mitgliedstaates)
- 사 . 레드-화이트-레드 카드 플러스(Rot-Weiß-Rot Karte plus)
 - 고급 전문인력, 유기한 정착, 노동제약 없음

- 아. 블루카드 EU (Blaue Karte EU)
 - 특별 고급인력, 유기한 정착, 제한적 노동가능
- 자. 영주권 EU(Daueraufenthalt EU)
 - 무기한 정착, 오스트리아 전역 노동가능

3. 체류증(Aufenthaltstitel)의 유효기간

체류증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12개월이지만, 아래 체류증의 경우는 예외임

가. 최장 24개월:

- 레드-화이트-레드 카드(Rot-Weiß-Rot Karte)
- 블루카드 EU (Blaue Karte EU)
- 단, 고용계약 기한이 2년 미만일 경우 고용계약기간+3개월
- 나. 최장 3년: 아래의 체류증 취득자가 독일어능력증빙서류(Integrationsvereinbarung Modul 1)를 제출하고 지난 2년 동안 지속적, 합법적으로 체류한 경우
 - 레드-화이트-레드 카드 플러스(Rot-Weiß-Rot Karte Plus)
 - 정착허가(Niederlassungsbewilligung)
 - 동반가족 정착허가(Niederlassungsbewilligung Angehöriger)
 - 노동불가 정착허가

(Niederlassungsbewilligung - ausgenommen Erwerbstätigkeit)

- 오스트리아 국민 가족(Familienangehöriger)

다. 무기한:

영주권(Daueraufenthalt -EU) 단 영주권 카드는 5년간 유효함. (5년마다 갱신)

- 라. 여권의 유효기간에 따라 체류증의 유효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으니, 미리 여권 만료 기간을 확인하여 갱신해야 함
 - 여권 만료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어도 공관에서 갱신 신청이 가능

4. 체류증(Aufenthaltstitel) 발급조건

가. 생계유지를 위한 충분한 재정능력(Gesicherte Lebensunterhalt)

일반사회보험법 제293조의 규정에 의거, 오스트리아에서 살 수 있는(월 임대료 등을 제외한) 생계능력을 아래와 같이 갖추어야 합니다. 하기 금액은 임대료, 신용카드비용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, 추가로 294.65의 여유금액 필요.

- 독신: € 933.06/월

- 부부: € 1.398.97/월

- 자녀 1인당: € 143.97/월
- 나. 의료보험(Krankenversicherung): 오스트리아 체류 중 모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 법에 상응하는 의료보험 필수
 - 오스트리아의 공보험(Gebietskrankenkasse)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
 - 비정규학생 등: 공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오스트리아 사보험 가입
- 다. 거주지(Unterkunft): 임대 또는 구입 계약을 통해 정한 합법적인 거주지
- 라.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: 극우세력, 테러집단에 가입하지 않고 않을 자

5. 체류증(Aufenthaltstitel) 신청 시 공통 구비서류

- 가) 신청서: 담당관청에 비치
- 나) 유효한 여권 및 여권 복사본
- 다) 여권사진 2매
- 라) 출생증명서(Geburtsurkunde) 원본 및 복사본
- 마) 혼인증명서(Heiratsurkunde) 원본 및 복사본: 기혼자에만 해당
- 바) 신원조사(범죄경력)증명서(Strafregisterbescheinigung) 원본: 만 14세 이상으로 최초 신청 시 및 목적 변경 시 필요, 연장 시 불필요
- 사) 주택임대계약서(Mietvertrag) 및 집세 납부 증빙서류: 계좌이체 시 은행슬립 원 본 제시, 복사본 제출
- 아) 거주등록증(Meldebestätigung) 원본 및 복사본
- 자) 오스트리아 의료보험가입증명서 및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원본 및 사본: 계좌이 체 한 경우 은행슬립 원본 제시, 사본 제출
- 차) 충분한 재정능력 증빙서류: 은행계좌 슬립 원본 및 사본 또는 월급명세서 원본 및 사본 등

6. 체류중(Aufenthaltstitel) 발급요금

- 120 EUR
- 요금은 매년 달라지므로 확인 필요

Ⅲ. 오스트리아 체류증 별 신청방법

1. 체류허가(Aufenthaltsbewilligung)-유기한 임시체류, 정착 불가

가. 최초 체류허가 신청

- 1) 일반적으로 체류허가를 발급 받기 위한 최초신청은 오스트리아 외의 국가에서 해야 함
- 2) 오스트리아 내에서의 최초 체류허가신청 자격 조건

- 오스트리아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적자의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 동안 최초신 청 가능(예: 대한민국 국민)
- 연구원 및 그의 가족은 허가된 체류기간 동안 최초신청 가능
- 구직 비자(Visum zum Zweck der Arbeitssuche) 취득자가 고급 전문인력으로 서 레드-화이트-레드 카드(Rot-Weiß-Rot Karte)를 신청할 경우
- 정착 및 체류법 제 64조 제4항에 의거, 합법적으로 오스트리아에 체류중인 오스 트리아 소재 대학교를 졸업 한 자

나. 연장신청 기한

- 1) 오스트리아 내의 거주지 관할 담당 관청에서 해야 함
- 2) 연장기한엄수: 현 소지 체류허가증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연장신청이 가능하며 꼭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함
- 3) 주의: 위 연장기한 내에 연장 신청하지 않은 경우, 체류허가 연장신청은 불가능하며, 다시 최초 체류허가신청을 하여야 함
- 4) 현 소지 체류허가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체류연장 신청한 경우, 이에 대한 사실 증명은 해당관청에 요청하여 여권 내에 부착 받을 수 있음. 이 사실증명의 유효기 간은 3개월이며, 오스트리아로 체류허가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았어도 출입국이 가 능한
- 5) 연장신청을 기한 내에 한 경우 새 체류허가증을 발급받을 때까지 오스트리아에서의 합법적 체류가 가능함

다. 체류허가 신청 구비 서류: 기본구비서류 외

- 1) 체류목적 증빙서류 원본 및 복사본
- ※ 연장 시 공통: 대출기록조회서(KSV) 원본 및 복사본 (최초 신청 시 불필요)
 - 다국적기업 내 전근자 (Unternehmensintern transferierter Arbeitnehmer, ICT) (제3국(대한민국) > 오스트리아 이동): 연수생(Trainee)은 학력증빙(대졸) 서류 필수, 전문가(Spezialistin/Spezialist)는 근무 직업군 관련 자격·경력·학력(대졸) 증빙서류, **Employers** 재직증명서(Arbeitsbestätigung). Reference(Dienstzeugnis), (Führungskraft): 매니저급 이상의 지위를 증빙할 수 있는 노동계약서. 오스트 리아 전근 이후 기업으로 귀환하거나 타국 주재 또는 자사 그룹의 타회사 등으 로 전근 할 수 있다는 증명서, 회사증서(Firmenbuchauszug): 페이퍼 컴퍼니가 아님을 또는 파산소송 중이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는 회사증서
 - 다국적기업 내 전근자 (mobile ICT): EU 내 이동 시 1.1 의 서류 + 유효한 타 EU 회원국의 mobile ICT 체류증
 - 다국적기업 파견자(Betriebsentsandter): 50주 미만 파견증빙서류, 관할지역 공 공 고용서비스센터(AMS)의 Sicherungsbescheinigung 또는 다국적기업 파견자 고용허가서(Beschäftigungsbewilligung)
 - 자영업자(Selbständiger): 오스트리아 내에서 계약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6개월

- 이상 체류하여야 하는 자. 한오스트리아 회사간 설비계약서(Werkvertrag)
- 예술가(Künstler): 예술 전공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및 자영 예술가 활동경력증 명서(6개월 이상) 또는 고용예술가의 경우 외국인 근로법에 따른 고용계약서 (Arbeitgebererklärung nach dem Ausländerbeschäftigungsgesetz), 고용예술 가의 경우 고용주의 보증서 추가 징구 가능
- 예외적 고용직 근로자(Sonderfälle unselbständiger Erwerbstätigkeit): 종교인, 언론인, AuPair 등 해당. 고용계약서(Dienstvertrag), 공공고용서비스센터(AMS) 발급 신고증명서(Anzeigebestätigung) 추가 징구가능
- 초중고생 (Schüler): 의무교육실시 학교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/ 비의 무교육기관(예: 특정 콘서바토리)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/ (비)정규학생 의 경우 공·사립 학교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
 - 미성년자의 경우는 오스트리아에 합법적인 체류를 하고 있는 성인이 해당 " 미성년자 교육·보호 권한"을 부여 받은 사실증빙서류(Nachweis über die Pflege und Erziehung durch eine volljährige natürliche Person mit Wohnsitz in Österreich)
 - 예) 국내 부모(친권자)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한 위임장의 영문번역공증본
- 대학생(Studierender): 입학허가서(Zulassung)/재학증명서(Studienbestätigung) 연장 신청 시-성적증명서(Studienerfolgsnachweis) 추가 제출
- 연구원(Forscher): 연구기관의 채용증빙서류
- 봉사자(Freiwillige): 유럽 역 내 봉사활동 증명서, 활동할 단체와의 협약서, 경 우에 따라 봉사단체의 보증서(Haftungserklärung) 요구 가 능
- 비영리조직 근무자(Sozialdienstleistender): 비영리 근무계약서 및 비영리조직 의 보증서(Haftungserklärung)

대학(원)생 체류허가 취득자의 아르바이트

대학(원) 재학 중 제3국민(대한민국 국적자 포함)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. 단,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6주 전에 반드시 공공고용서비스센터 (AMS: Arbeitmarktservice)에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하며, 동 신청은 고용주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.

- 1차 학업과정(1.Studienabschnitt) 중 최장 10시간/주 학사과정
- 2차 학업과정(2.Studienabschnitt) 중 최장 20시간/주 석사, 박사과정

또, 교육기관(예: 대학교)의 연구 혹은 강의분야에서 학술적인 활동을 하는 외국인 아르바이트생들은 예외적으로 노동허가가 필요 없습니다.

2. 정착허가(Niederlassungsbewilligung): 유기한 정착, 자영업

가. 신청자격조건

- 1) 레드-화이트-레드 카드를 취득한지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직업활동을 한 자
- 2) 정착허가 취득자의 가족 쿼터제3)
- 3) 타 EU국의 영주권(Daueraufenthalt-EU)을 소지한 제3국민
- 4) (다)의 가족 쿼터제

나. 담당기관

- 1) 오스트리아 외의 국가에서 신청 시: 재외공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.
- 2) 오스트리아 내 신청 시: 거주관할 행정관청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.
- 다. 구비서류: 기본 구비서류 외 아래 서류 추가
- 1) 재정능력증빙서류: 월급명세서(Lohnzettel, Lohnbestätigungen), 노동계약서 (Dienstverträge), 기타 수입원 증빙서류(Bestätigungen über Pensions-, Renten- oder sonstige Versicherungs-leistungen), 투자자본 소유 증빙서류(Nachweis über Investitionskapital), 자산증빙서류(eigenes Vermögen in ausreichender Höhe) 중 한가지
- 2) 타 EU국의 영주권(Daueraufenthalt-EU) 소지자의 경우: 자영업자임을 증빙하는 서

³⁾ 쿼터제: 연간 발급 가능한 체류증 수가 법으로 지정되어 있으며, 가능 발급수가 채워진 경우, 추가 발급이 불가능함

류 및 자영활동의 목표와 활동내용의 기술 설명자료((Businessplan)

- 3) 타 EU국의 영주권(Daueraufenthalt-EU) 소지자의 가족: 타 EU국의 영주권(Dauer-aufenthalt-EU) 증빙, 쿼터제 적용
- 4) 독일어 능력증빙서류
- 5) 추가서류 징구 가능

3. 노동불가 정착허가(Niederlassungsbewilligung-ausgenommen Erwerbstätig-keit) - 사적 체류목적, 노동불가 유기한 정착

가. 신청자격조건: 체류증 발급조건 충족 외

- 1) 면책특권을 소유한 제3국민으로(예: 외교관) 퇴임 후 오스트리아에서 직업활동을 하지 않을 자
- 2) 타 EU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제3국민과 그의 가족 쿼터제
- 3) 기타 제 3국민과 그의 가족 쿼터제: 아래 일반인 보다 2배의 재정능력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, 일정한 월소득을 증명하여야 함.

오스트리아 일반 사회보장법(ASVG) (2016년 기준):

○ 독신: € 882.78/월 > 2배: 1,765.56 Euro

○ 부부: € 1,323.58/월 > 2배: 2,647.16 Euro

○ 자녀 1인당: € 136.21/월 > 2배: 272.42 Euro

4) 독일어 능력증빙서류

나. 구비서류: 기본서류 외

- 1) 가족: 조건에 부합하는 체류증 소지 증명
- 2) 면책특권 제3국민(예: 외교관): 면책특권 소지자 증빙서류 및 퇴임증빙서류
- 4. 노동불가 친인척 정착허가(Niederlassungsbewilligung Angehöriger)

- 노동불가 유기한 정착

가. 발급대상자: 오스트리아에서 합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제3국민의 친인척

- 나. 친인척(Angehöriger)의 범위
 - 1) 경제적으로 실제 부양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에서 합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친척: 예) 부모, 장인장모, 시부모, 조부모
 - 2) 실제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며,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본국의 동거자
 - 3) 기타
 - 실제 경제적 부양을 하고 있는 본국의 가족 또는
 - 실제 본국에서 가정생활을 같이한 가족 또는
 - 보호자가 없는, 심한 병환에 있는 본국의 가족

- 다. 구비서류: 기본 구비서류 외
 - 1) 독일어 능력 증빙서류
 - 2) 초청자의 보증서(Haftungserklärung)
 - 3) 추가 징구서류:
 - 부양방법 및 부양범위 증빙서류(Nachweis über die Art und den Umfang der Unterhaltsleistung)
 - 본국 초청가족 관계 증빙 및 부양방법 및 범위 증빙서류(Nachweis des Bestehens einer dauerhaften Beziehung mit der Person, die die Familie zusammenführt, im Herkunftsstaat und Nachweis über die Art und den Umfang der Unterhaltsleistung)
 - 부양사실 증빙서류(Nachweis über die Art und den Umfang sowie den Zeitraum des bereits geleisteten Unterhalts)
 - 본국에서 동일한 가정에서 거주한 증빙서류(Nachweis über die häusliche Gemeinschaft im Herkunftsstaat)
 - 본국 초청대상자의 의료진단 및 초청자에 의한 절대적 부양 필요성을 증빙하는 서류(Nachweis der schwerwiegenden gesundheitlichen Gründe und Nachweis über die zwingende Erforderlichkeit der persönlichen Pflege durch die Person, die die Familie zusammenführt)
 - 4) 위 외에도 증빙서류의 추가 징구 가능함

5. 국민 가족(Familienangehöriger)

- 국민의 가족, 유기한 정착, 오스트리아 전역 노동가능

가. 발급대상

- 1) 오스트리아 국민의 제3국민 가족
- 2) 3개월 이상 오스트리아에 체류하고 있는 EU·유럽경제협력회원국 · 스위스 국민의 제3국민의 가족
- 나. 가족(Familienangehöriger)의 범위: 핵가족4)
 - 1) 배우자 (만 21세 이상)
 - 2) 동성 배우자 (만 21세 이상)
 - 3) 미성년 자녀 (입양 및 의붓 미성년 자녀 포함)
- 다. 구비서류: 기본 구비서류 외 독일어 능력 증빙서류
- 6. 레드-화이트-레드 카드(Rot-Weiß-Rot Karte)
 - 고급 전문인력, 유기한 정착, 제한적 노동가능

2011년 7월 1일에 도입된 레드-화이트-레드 카드(Rot-Weiß-Rot Karte)는 제3국

⁴⁾ 핵가족(Kernfamilie): 부부와 미혼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족

의 고급 전문인력에게만 발급하고 있음

가. 발급대상자

- 1) 고급전문인력 (Besonders Hochqualifizierte)
- 2) 인력부족 전문직(Fachkräfte in Mangelberufen)
- 3) 기타 고용전문인력(Sonstige unselbstständige Schlüsselkräfte)
- 4) 오스트리아 소재 대학 졸업자(Studienabsolventen)
- 5) 기타 자영전문인력(Selbstständige Schlüsselkräfte)
- 6) 스타트업 설립자(Start-up Gründer/innen)
- 7) 타국 EU 영주권 소지자(Personen mit einem Aufenthaltstitel "Daueraufenthalt EU" eines anderen EU-Mitgliedstaates)
- 나. 유효기간: 2년
- 다. 적격심사

위 전문 인력에 대한 적격심사는 공공고용서비스센터(AMS)에서 담당하며, 정해진 고용주 밑에서만 일할 수 있음

라. 대상자 별 취득조건

1) 고급전문인력 (Besonders Hochqualifizierte)

- 신청자격조건: 포인트 시스템5)에 따라 학위, 연구 활동, 수상여부, 실무경험, 어학 능력 (독일어 혹은 영어) 등과 연령을 고려하여 점수를 부여하며 명시된 점수를 충족 한 자 (100점 만점에 70점을 획득해야 함) 표1 참고
- 신청기한: 채용일 8주 전까지 발급신청 완료하여야 함.
- 신청방법: 오스트리아 외의 국가에서도 가능하며 구직자 비자(『외국인법』제24a 조)를 소지한 자들은 오스트리아 내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, 고용주도 대신하여 신청 가능
- 구비서류: 기본 구비서류 외
 - 졸업 및 성적증명서(최소 4년제 대학 이상 졸업)
 - Post-Doc (Habilitation) 증빙서류:

(http://www.migration.gv.at/de/service-und-links/punkterechner.html)

⁵⁾ 포인트 시스템(Punktrechner)

- (상장)기업에서의 고위직(Führungsposition)을 증명하는 연봉증빙서류
 - 납세증명서(Steuerbescheid) 또는 급여명세서(Lohnbestätigung) 및
 - 고위직 경력 증명서 및
 - 상장기업증명서 또는 근무영역 및 활동에 대한 재직 기업의 긍정적 소견서
- 연구 활동 및 혁신활동 증빙서류 제목과 ECTS⁶⁾ 출판사가 명기된 학술간행 증빙 또는
- 연구개발 활동 또는 학술 강단 활동을 증명하는 대학 또는 공사립 연구기관의 증 빙서 또는 특허등록 등본
- 수상 증빙서류: 상장 등
- 경력증빙서류: Certificate of Service (Dienstzeugnis) 및 Letter of Employment Confirmation (Arbeitsbestätigung)
- 독일어 또는 영어능력 증빙서류
- 오스트리아 소재대학 (제2차 과정 또는 ECTS Credit Points의 절반 점수 이상 증빙서류), Studienbuch, 성적표(Prüfungszeugnisse)
- 오스트리아 소재 대학 발급 디플로마 또는 학사 및 석사 학위증

〈표 1〉 고급 전문인력 허가를 위한 점수표 (『외국인고용법』제12조)

조건	점수
특별한 자격 또는 능력	획득할 수 있는 최대 점수40
최소 4년제 대학 졸업	20
-수학, 전산학, 자연과학 혹은 공학	30
- 박사학위 혹은 대학교수자격 취득	40
상장기업 고위간부로서의 연봉 혹은 오스트리아 경제회의소 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기업의 고위간부의 연봉	
50,000 - 60,000 유로	20
60,000-70,000 유로	25
70,000 유로 이상	30
연구 및 이노베이션 활동 (특허신청, 출판물)	20
수상내역 (공인된 주최기관)	20
실무경험 (학업방향에 부합 혹은 고위간부)	획득할 수 있는 최대 점수 20
실무경험 (매년)	2
오스트리아 내 6개월 실무경험	10
어학능력	획득할 수 있는 최대 점수 10
독일어 혹은 영어 초급 A1 언어구사능력	5

⁶⁾ ECTS: 유럽 신용 전송 및 축적 시스템(European Credit Transfer and Accumulation System)

독일어 혹은 영어 초급 A2 언어구사능력	10
연령	획득할 수 있는 최대 점수20
만 35세 까지	20
만 40세 까지	15
만 45세 까지	10
오스트리아 소재 대학교 학력	획득할 수 있는 최대 점수10
두 번째 학업과정 혹은 규정되어있는 학점의 절반	5
디플로마, 학사 혹은 석사 학위	10
획득할 수 있는 최대 점수의 합계	100
필요한 최소 점수	70

2) 인력부족 전문직(Fachkräfte in Mangelberufen)

○ 신청자격

- 노동·사회·소비자보호부(Bundesministers für Arbeit, Soziales und Konsumentenschut)가 지정한 인력부족 직업군에 해당하는 직업학교 졸업
- 오스트리아의 Berufsbildende Höhere Schule (BHS) 이상의 학교 졸업자
- 인력부족 직업군에 해당하는 직업교육 수료여부, 직업교육과 관련한 실무경험, 고등학교 졸업여부, 어학능력 (독일어 혹은 영어) 등과 연령을 고려하여 점수를 부여하며 90점 만점에 55점을 획득해야 합니다 〈표 2〉 참고
- 신청은 오스트리아 외의 국가에서도 가능하며 고용주가 오스트리아 내에서 대신 하여 신청 가능
- 인력부족 직업군에 해당하는 일자리 확보

○ 구비서류: 기본 구비서류 외

- 해당직업 관련 학교 졸업장 및 성적증명서 또는 디플로마
- 전문지식 및 전문교육 증명서
 - Dienst- oder Ausbildungszeugnis 및
 - Letter of Employment Confirmation (Arbeitsbestätigung)
- 대학입학 가능한 고등학교 졸업장 및 성적증명서
 -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추가 징구 가능
- 최소 3년제 이상 대학졸업 증명서
 - 졸업증명서 및
 - 대학 또는 교육기관의 지위(등급)증명(Nachweis über den Status der Universität oder sonstigen tertiären Bildungseinrichtung)
- 전공에 부합한 경력증명
 - Certificate of Service(Dienstzeugnis) 및
 - Letter of Employment Confirmation (Arbeitsbestätigung)

- 독일어 또는 영어능력 증명
- 추가 점수: 프로운동선수 또는 프로트레이너
 - Certificate of Service(Dienstzeugnis) 및
 - Letter of Employment Confirmation (Arbeitsbestätigung)
- 『외국인고용법』에 따른 고용주진술서(Arbeitgebererklärung nach dem Ausländerbeschäftigungsgesetz)

〈표 2〉인력부족 전문직 허가를 위한 점수표 (『외국인고용법』제12조)

조건	점수
· 자격	획득할 수 있는 최대점수30
인력이부족한 일자리와 관련된 직업교육 이수	20
2002년 『대학교법』 제64조 제1항에 의거한 고등학교 졸업	25
최소 3년제 대학교 졸업	30
실무경험 (학업방향에 부합 혹은 고위간부)	획득할 수 있는 최대 점수10
실무경험 (매년)	2
오스트리아 내에서 실무경험 (매 년)	4
어학능력	획득할 수 있는 최대점수 15
독일어 초급 A1 어학능력	5
독일어 초급 A2 어학능력	10
독일어 초급 B1 어학능력	15
영어	획득할 수 있는 최대점수 10
영어 초급 A1 어학능력	5
영어 초급 B1 어학능력	10
연령	획득할 수 있는 최대점수 20
30세까지	15
40세까지	10
획득할 수 있는 최대 점수 합계	90
필요한 최소 점수	55

3) 기타 고용전문인력(Sonstige unselbstständige Schlüsselkräfte)

○ 발급조건

- 일자리 확보
- EU국민과 오스트리아 내 장기 정착자들 우선.
- 최저임금: 만30세 미만 2,610 EUR(2019), 만 30세 이상 3,132 EUR(2019)
- 인력부족 직업군에 해당되는 직업교육 수료여부, 경험 및 실무능력, 고등학교 졸업여부, 어학능력 (독일어 혹은 영어), 연령을 고려하여 점수를 부여하며 75점 만점에 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함 〈표 3〉참고
- 신청은 오스트리아 외의 국가에서도 가능하며 고용주가 이를 대신하여 신청 할 수 있음

- 구비서류: 기본 구비서류 외
 - 해당직업 관련 학교 졸업장 및 성적증명서 또는 디플로마
 - 전문지식 및 전문교육 증명서
 - Dienst- oder Ausbildungszeugnis (Certificate of Service or Education)
 - Letter of Employment Confirmation (Arbeitsbestätigung)
 - 대학입학 가능한 고등학교 졸업장 및 성적증명서
 - •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추가 징구 가능
 - 최소 3년제 이상 대학졸업 증명서
 - 졸업증명서
 - 대학 또는 교육기관의 지위(등급)증명(Nachweis über den Status der Universität oder sonstigen tertiären Bildungseinrichtung)
 - 전공에 부합한 경력증명
 - Certificate of Service (Dienstzeugnis)
 - Letter of Employment Confirmation (Arbeitsbestätigung)
 - 독일어 또는 영어능력 증명
 - 추가 점수: 프로운동선수 또는 프로트레이너
 - Certificate of Service(Dienstzeugnis)
 - Letter of Employment Confirmation(Arbeitsbestätigung)
 - 『외국인고용법』에 따른 고용주진술서(Arbeitgebererklärung nach dem Ausländerbeschäftigungsgesetz)

〈표 3〉기타 고용 전문인력 허가를 위한 점수표 (『외국인고용법』제12조)

조건	점수
자격	획득할 수 있는 최대 점수30
직업교육이수 혹은 의도하는 직업에 대한 특별 지식, 기술	20
2002년 『대학교법』 제64조 제1항에 의거한 고등학교 졸업	25
최소 3년제 대학교 졸업	30
교육방향에 부합하는 실무경험	획득할 수 있는 최대점수 20
실무경험 (매년)	2
오스트리아 내에서의 실무경험 (매년)	4
어학능력	획득할 수 있는 최대점수 15
독일어 초급 A1 언어구사능력	5
독일어 초급 A2 언어구사능력	10
독일어 중급 B1 언어구사능력	15
영어	획득할 수 있는 최대점수 10
영어 A2 언어구사능력	5
영어 B1 언어구사능력	10
연령	획득할 수 있는 최대점수 15
30세까지	15
40세까지	10
획득할 수 있는 최대 점수의 합계	90
프로운동선수들을 위한 추가 점수	20

4) 오스트리아 소재 대학 졸업 자(Studienabsolventen)

○ 발급대상자

최소 2차 학업과정(2. Studienabschnitt)부터 오스트리아 소재 대학교에서 공부하여 졸업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

- 오스트리아 소재 Fachhochschule(FH) 혹은 사립대학교 졸업학위도 인정

○ 발급조건

- 전공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먼저 확보되어야 신청 가능
- 최저임금: 2,187 EUR
- 포인트시스템(점수표) 비적용
- 오스트리아 소재 대학교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6개월 간 구직체류가 가능(조건: 구직체류 비자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함)

○ 구비서류: 기본 구비서류 외

- 오스트리아소재대학 (제2차 과정 또는ECTS Credit Points의 절반 점수 이상 증 빙서류), Studienbuch, 성적표(Prüfungszeugnisse)
- 오스트리아 소재 대학 발급 디플로마 또는 학사 및 석사 학위증
- 『외국인고용법』에 따른 고용주진술서(Arbeitgebererklärung nach dem Ausländer Beschäftigungsgesetz)

5) 기타 핵심 전문인력(Selbstständige Schlüsselkräfte)

- 구비서류: 기본 구비서류 외
 - 자본이체 증명서 또는 일자리 창출보장 증빙서류(Nachweis des Transfers von Investitionskapital oder der Schaffung und Sicherung von Arbeitsplätzen) 및
 - 직업활동의 목표 및 기술(Beschreibung und Ziele der beabsichtigten unternehmerischen Tätigkeit - "Businessplan")

6) 스타트업 설립자(Start-up Gründer/innen)

○ 발급대상자

- 혁신제품, 서비스, 기술개발 후 시장 도입이 가능한 회사 설립을 할 수 있는 자
- 회사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핵심 사업구상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
- 기획하는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자
- 자본금 5만 유로 중 절반 이상 자기자본금 충당할 수 있는 자
- 아래 점수표에서 최소 50점을 넘는 자

〈표 4〉 스타트업 설립자 허가를 위한 점수표 (『외국인고용법』제12조)

조건	점수
자격	획득할 수 있는 최대점수30
관련 직업교육 수료자 또는 관련 지식 보유자	20
최소 3년 관련 교육 이수	20
오스트리아 내 학사, 석사, 박사 졸업자 또는 직업교육 이수자	30
학업이수 관련 실무경험	획득할 수 있는 최대 점수10
실무경험 (매년)	2
어학능력	획득할 수 있는 최대점수 15
독일어 초급 A2 어학능력	5
독일어 초급 B1, B2 어학능력	10
독일어 중급 B2 어학능력	10
독일어 상급 C1, C2 어학능력	15
추가 획득 가능한 점수	획득할 수 있는 최대점수 30
설립 자본금 최소 5만 유로 투자 가능	10
오스트리아 내 기업설립 센터 또는 스타트업 진흥기관 등록 시	10
35세까지	10
획득할 수 있는 최대 점수의 합계	85
필요한 최소 점수	50

7) 타국 EU 영주권 소지자

(Personen mit einem Aufenthaltstitel "Daueraufenthalt – EU" eines anderen EU-Mitgliedstaates)

- 발급대상자 타 EU국 영주권 소지자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
 - 고급전문인력 (Besonders Hochqualifizierte)
 - 인력부족 전문직(Fachkräfte in Mangelberufen)
 - 기타 고용전문인력(Sonstige unselbstständige Schlüsselkräfte)
 - 대학교 졸업자(Studienabsolventen)
 - 기타 자영전문인력(Selbstständige Schlüsselkräfte)

7. 레드-화이트-레드 카드 플러스(Rot-Weiß-Rot - Karte plus)

- 고급 전문인력, 유기한 정착, 노동제약 없음

가. 발급대상자

- 1) 레드-화이트-레드 카드 (Rot-Weiß-Rot Karte) 취득자로 지난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오스트리아에서 근로한 자
- 2) 블루카드 EU(Blaue Karte EU)취득자로 지난 24개월 중 21개월 이상 오스트리아 에서 근로한 자

- 3) 제3국민의 가족으로 레드-화이트-레드(Rot-Weiß-Rot Karte)를 취득한 자 연장 신청하는 경우
- 4) 타 EU국가의 영주권(Daueraufenthalt-EU)취득자의 가족으로 레드-화이트-레드 (Rot-Weiß-Rot Karte)를 취득한 자 -오스트리아 입국 3개월 이내 신청 가능(관할기관은 4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함)
- 5) 블루카드-EU 취득자의 가족: 취득자가 21개월 이상 오스트리아에서 근로한 경우 에 해당
- 6) 타 EU국의 블루 카드-EU 취득자 가족으로 해당 타EU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한 자: 취득자가 21개월 이상 타 EU국에서 근로한 경우에 해당
- 7) 영주권(Daueraufenthalt-EU) 소지자의 가족 쿼터제 적용
- 8) 난민자격자의 가족 쿼터제 적용
- 9) 레드-화이트-레드 카드 플러스(Rot-Weiß-Rot Karte plus) 취득자의 가족 -쿼터제 적용
- 10) EU·유럽경제협력국·스위스 국민의 가족 쿼터제 적용
- 11) 합법적 (동성)동거인(Lebenspartner/Lebenspartnerin)
- 12) 기타 본국의 부양의무 친인척
- 13) 친인척 정착허가(Niederlassungsbewilligung Angehöriger) 취득자 쿼터제 적용, 공공고용서비스센터의 『외국인고용법(§20e Abs. 1Z1Ausländerbeschäftigungsgesetz)』에 따른 서면통보 필요
- 14) 기타 제 3국민:
 - 2년 이상 연구원 정착허가(Niederlassungsbewilligung-Forscher) 취득자로서 연구한 자
 - 정착허가(Niederlassungsbewilligung) 취득자 또는 그 가족으로서 최소 2년 오 스트리아에 합법적으로 정착하고 현지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자
 - 영주권(Daueraufenthalt EU)을 취득하였던 자로 유럽경제협력국을 떠나 장기 체류하여 영주권이 해지되었거나, 오스트리아를 떠나 외국에 장기 체류하여 영주권이 해지되었거나, 타 EU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영주권이 해지된 경우
 - 어떠한 사유로 인해 국적을 상실했거나, 박탈당한 오스트리아 국민
 - EU 영주권(Daueraufenthalt-EU) 취득자로서
 - 정착허가(Niederlassungsbewilligung)를 취득하여 최소 12개월 이상 오스트 리아에 정착한 자
 - 지난 12개월간 고용 근로자로서의 활동하였다는 공공서비스고용센터(AMS)의 증빙서류 필요
 - 난민자격 체류증 소지자로 체류자격변경을 위한 특별한 근거가 있는 자
 - 보호자 미상의 고아/미성년

8. 블루카드 EU(Blaue Karte EU)

- 특별 고급인력, 유기한 정착, 제한적 노동가능
- 가. 발급대상자: EU 법령(2009/50/EG)에 의거 고도의 자격을 가진 학자(Akademiker)

나. 발급조건:

- 1) 3년제 이상의 대학(교육기관)졸업
- 2) 대학 또는 기타 제3 단계 교육(tertiary education)⁷⁾ 기관의 지위(등급) 증빙서류 (Nachweis über den Status der Universität oder sonstigen tertiären Bildungseinrichtung)
- 3) 1년 이상 최고 전문인력으로서 고용될 예정임을 증빙하는 서류(일자리 확보 증빙 서류)
- 4) 오스트리아 통계청(Statistik Austria)에서 공표한 평균연봉의 1,5배 봉급 수령 증빙 2016년 기준: 평균연봉 €58.434, 월 평균 모든 성과급여를 포함 월 €4.174
- 5) 해당직업 관련 전공분야 졸업증빙 서류
- 다. 발급절차: 레드-화이트-레드("Rot-Weiß-Rot Karte)의 발급 절차와 동일
- 라. 유효기간: 2년
- 9. 영주권 EU(Daueraufenthalt EU)
 - 무기한 정착, 오스트리아 전역 노동가능
 - 가. 발급대상자

아래 정착 가능 체류증을 취득하여 오스트리아에서 5년간 지속적으로 체류한 자

- 1) 레드-화이트-레드 카드 (Rot-Weiß-Rot Karte)
- 2) 레드-화이트-레드 카드 플러스 (Rot-Weiß-Rot Karte plus)
- 3) 정착허가 (Niederlassungsbewilligung)
- 4) 노동불가 정착허가 (Niederlassungsbewilligung - ausgenommen Erwerbstätigkeit)
- 5) 친인척 정착허가 (Niederlassungsbewilligung Angehöriger)
- 6) 블루카드-EU (Blaue Karte EU)
- 7) 오스트리아 국민가족 (Familienangehöriger)
- 나. 발급조건: 독일어 능력 증빙(Integrationsvereinbarung의 Modul 2)
- 다. 기한: 무기한. 단, 카드는 5년마다 갱신

⁷⁾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 대응하여 사용하는 용어로서, 학교교육 중 가장 높은 단계. 즉, 12년간의 교육 이후의 대학교육(전문대학 4년제 대학) 대학원교육 등을 총칭하는 말

Ⅳ. 설명회 질문과 답변 (2016.11.22)

- Q: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의 집에서 살고 있으며 임대료는 내지 않습니다. 체류허가를 담당하는 관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 합니다. 임대료를 내지 않은데 어떻게 임대계약서를 제출 할 수 있나요? 이에 대해 집주인이 직접 상황에 대한 책임보증서(Haftungserklärung)를 작성해 제출하였는데도 소용이 없습니다.
- A: 임대계약서에 임대료가 0유로라고 적혀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. 관청이 필요하는 것은 형식적인 계약서이며 따라서 금액은 임대인과 약속한 금액이라면 괜찮습니다. 오스트리 아 내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체류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법적 청구권(정착 및 체류 법 제 11조제2항)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예를 들면 거주지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 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입니다. 이에 반드시 임대계약서가 필요합니다.
- Q: 현재 오스트리아 소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. 정상적으로 최초체류허가신청을 마쳤지만 몇 달이 지나도 체류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. 한국의 여권으로는 무비자로 유럽에서 3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만 벌써 이 기한이 지났습니다. 이럴 경우에는 재학중 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가야하나요?
- A: 최초체류허가신청의 경우, 정상적으로 접수를 마쳤더라도 합법적으로 주어진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오스트리아에서 머물 수 없습니다. 만약 3개월 동안 무비자로 유럽에 머물 수 있다면 무비자 체류기간 이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 허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.
- Q: 체류허가연장을 하기 위한 서류접수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하나를 당장 제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누락된 서류 때문에 서류접수를 마칠 수 없었습니다.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?
- A: 기본적으로 체류연장신청을 할 때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그러나 이런 경우 '추가신청서(Zusatzantrag)'를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. 추가신청서란, 본인이 오스트리아 내에서 머물러야 하는 이유와 상황을 근거 있게 제시하여 관청에서 그것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서류이며, 이는 유럽인권조약에 근거합니다. 제출된 추가신청서의 수 납가능성은 전적으로 관청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, 그 기준은 신청자가 얼마나 충분히 오스트리아 내에 정착했는지의 여부 입니다. 추가신청서 제출의 경우 체류연장신청과정에서는 가능하지만, 최초체류허가신청에서는 불가능합니다. 처음 체류허가신청자가 오스트리아에 충분히 정착한 상태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오스트리아에 이미 이주한 상태 일수 없습니다.
- Q: 체류연장신청을 가능한 일찍 하고 싶습니다.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, 언제부터 가능한가요?
- A: 체류연장신청은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. 만기일이 지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했다면 그 이후로 체류허가가 나올 때까지 자유롭게 오스트리아 내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. 접수된 체류연장신청이 관청을 통해 접수되고 최종적인 허가가 나올 때까지 최장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 만약 필요하다면 이미 정상적으로 체류연장신 청을 접수했다는 기록을 여권 안에 남길 수 있습니다. 이 기록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. 오스트리아 외의 국가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할 때 이것을 통해

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- Q: 오스트리아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.
- A: 영주권을 받으려면 정착허가(Niederlassungsbewilligung)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. 5년 이상을 합법적으로 오스트리아에 체류했다고 해도, 그 기간 동안 목적성 체류허가(Aufenthaltsbewilligung)를 취득했었다면 영주권 취득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정착허가를 취득하기 이전에 목적성 체류허가(Aufenthaltsbewilligung)로 오스트리아에 머문 기간은 영주권을 취득할 때 인정됩니다. 다만 전체기간 중 절반을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체류기간으로 인정합니다(『정착 및 체류법』제 45조 제1항).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추가적으로 독일어 B1 어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더 이상 체류허가를 위한 연장신청이 필요 없지만, 5년마다 Karte를 새로 갱신하여 소지해야 합니다. 국적취득도 마찬가지로 정착허가(Niederlassungbewilligung)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소지했어야 취득자자격이 주어지며 오스트리아 내에서 체류한 기간이 적어도 10년 이어야 합니다.
- Q: 저는 국제적 기업의 고위전문근로자(Rotationsarbeitskraft) 신분으로 체류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가족들도 체류허가를 취득하여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습니다. 내년에는 자녀들이 18세가 되고, 현재 학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. 이런 경우에도 저의 체류허가의 사유를 근거로 가족들이 체류연장을 할 수 있는지요?
- A: 자녀가 18세가 되면 성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의 체류허가를 동시에 취득할 수 없습니다. 더구나 자녀가 오스트리아 소재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곳에 머물러야 할 목적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체류허가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.
- Q: 국제적 기업의 고위전문근로자(Rotationsarbeitskraft) 신분으로 체류연장신청을 할때는 반드시 취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그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오스트리아 노동청 (AMS) 에 갔지만 체류연장신청을 담당하는 관청에서 발급받으라고 하며, 오히려 관청에서는 노동청에서 발급받으라고 합니다. 어디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.
- A: 취업확인서를 발급하는 관청은 따로 법으로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담당자 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.
- Q: 현재 목적성 체류허가를 발급받아 오스트리아에서 대학생 신분으로 학업 중 입니다. 매달 부모님으로부터 약 1000유로를 송금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. 체류허가신청을 할 때 구비서류로써 5000유로 이상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는 통장잔고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만, 이런 절차가 필요하며 왜 돈의 출처 또한 밝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.
- A: 체류허가신청자가 오스트리아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, 이에 대해 부모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법적인 청구권이 없습니다. 때문에 개인이 이 부분에 대해 미연에 대비할 수 있는 금액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것에 대한 증명을 위해 통장잔고명세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. 돈에 출처에 대한 조사는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함 입니다.

- Q: 저는 오스트리아 소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앞으로 졸업 후 오스트리아에서 일자리를 찾길 원합니다. 졸업 후에는 체류연장신청을 할 때 어떤 목적으로 접수를 해야 할까요? 또 구직을 위한 체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?
- A: 오스트리아 소재 대학교를 졸업하면 구직자 신분으로 (『외국인법』제 24a 조) 6개월의 체류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그 기간 안에 구직활동을 하고 취업이 되면 Rot-Weiß-Rot Karte로 체류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.

✔ 유용한 사이트:

- ❖ 오스트리아 정부 정착·체류 관련 일반 정보 www.help.gv.at > Leben in Österreich > Aufenthalt in Österreich > Drittstaatsangehörige
- ❖ 오스트리아 내무부: 입국관련 정보 www.bmi.gv.at/cms/bmi_fremdenpolizei/
- ❖ 비엔나정착·체류 관련기관: Magstratsabteilung 35 www.wien.gv.at/kontakte/ma35/
- ❖ 주오스트리아대한민국대사관 http://overseas.mofa.go.kr/at-ko/index.do

※ 동자료는 지난 2016년 11월 개최된 "재외국민을 위한 오스트리아 체류·정착 설명회" 내용과 오스트리아 정착 및 체류법을 기반으로 정리한 자료이며,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. 끝.